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 연계투자·팩토링 사업
및 별도 계정 설치 근거 마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6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험·보증 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 신설 등	3
2. 부칙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보증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53조의3제2호·제3호,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 신설).

나. 중소·중견 조선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 등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험·보증 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보증 연계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3호, 안 제53조의3제2호 및 안 제53조의5 신설),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가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대외채권 만기일에 이를 회수하는 업무(이하 “팩토링”)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3조제1항제4호, 안 제53조의3제3호 및 안 제53조의 6 신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53조(업무)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53조의5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u>

현행	개정안
<u><신설></u> 3.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생략) ② ③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3. (생략) <u><신설></u>	4. 제5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7. ----- 제6호---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별도 계정의 구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3조의3(업무방법서) ----- ----- ----- -----, ----- -----.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팩토링에 관한 사항 4.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3조의5(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연계투자) ① 공사는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식 ② 공사의 보험·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의6(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운용) ① 공사는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외채

현행	개정안
	<u>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u>②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u>

우선, 보험·보증 연계투자 업무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공사는 현행 법 제53조에 따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을 공급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2] 법률상 공사 업무 범위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u> 2. <u>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u> 3. <u>기금의 관리 및 운용</u> 4. <u>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u>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u> 6. <u>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u>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u>부품·소재신뢰성보험</u>”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u>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u>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 추심업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이 중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공사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산운용지침(IPS)과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채권·주식 등을 매매¹⁾하고 있음.

[표 3]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폴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3	5,654,019	4,965,942 (6.0)	2,606,050 (4.7)	2,359,530 (7.4)	362 (0.1)
2024	6,602,925	6,133,074 (6.7)	2,542,804 (4.2)	3,589,978 (8.8)	292 (△0.0)
2025	8,127,322	7,260,578 (7.9)	2,375,401 (3.1)	4,884,885 (10.2)	292 (△0.0)

즉, 공사는 무역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보증 공급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과 달리 기관 업무 범위에 자본투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여 보험·보증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 법률에 따른 업무 및 기금 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1) 「무역보험법」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그러나 공사는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실적, 거래처 리스크 이력 등 실질적인 신용정보를 수집·파악할 수 있는 반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외거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 및 해외거래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려워 우수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장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한 공사가 보험·보증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중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 운용 다변화 및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4] 신보·기보 보증연계투자 규모 및 수익률

(단위: 억원, %)

기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용보증기금	투자규모	590	591	591	557	664
	수익률	△1.65	△1.97	1.87	△0.79	5.04
기술보증기금	투자규모	259	255	394	493	981
	수익률	13.42	△0.9	42.32	4.49	22.91

자료: 뉴스토마토 기사(2024.10.8.) 발췌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1761&utm>)

다만, 보험·보증 심사 및 지원은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공사가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실 또는 사업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 제53조의5제3항은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보증 기관인데, 주식,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 제53조의5제2항은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과 유사하게 보증연계투자총액이 무역보험기금의 1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고자 함.

[표 4] 신보·기보 보증연계투자 관련 입법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1. 삭제 <2021. 10. 19.>
- 2. 삭제 <2021. 10. 19.>
- 3. 삭제 <2021. 10. 19.>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동 법률상 ‘기금’은 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정부 출연금, 은행·기업 출연금 등)과 부채(보험금 지급예정액 등)의 총합인데,

보험·보증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규모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자본’, 즉 ‘순자산’의 10%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기관으로서 법률상 기본재산 및 법정보증배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연계투자 규모 제한시 각종 지급준비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도록 기본재산 및 이월이익금 대비 10% 또는 20%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팩토링 업무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공사는 현재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적후 수출 신용보증’(이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이는 수출 중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거래처로부터 환어음 등의 수출채권을 받고,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공사가 이를 연대보증²⁾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조기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2) <https://ksure.or.kr/rh-kr/cntnts/i-170/web.do>

이 같은 현금화 방식은 일종의 대출로서 수출기업의 여신한도에 포함되므로 이미 대출금액이 많은 기업은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 수입기업이 대금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공사가 보증률(최대 90%) 내에서 금융기관에 보상하므로, 현금화 이후에도 수출기업이 부분적으로나마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표 4]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및 수출팩토링 비교

구 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수출팩토링
지원대상	중소·중견 수출기업	
차입금 여부	○	×
여신한도	○	×
상환청구권	○	×
수수료(할인율)	낮음	높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사가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팩토링 사업을 신설하면, 수출기업은 여신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상환청구 부담이 없는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존 보증상품의 보증수수료에 비해 채권할인율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재정여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출입은행³⁾, 외국계은행,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우량 수입자 거래 위주로 수출팩토링을 운영 중인데,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면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또한, 개정안은 기존 보험·보증 공급 업무 외에도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수익·비용이 새로 발생하게 되나, 현행법 제35조⁵⁾는 기금의 수입·지출 항목을 열거하여 규율하고 있음.

팩토링 및 보험·보증 연계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이 기존 기

3) 수은 수출팩토링 규모 1.9조원('24.1~9월) 중 기업규모별 실적(억원, 비중) : (대) 9,280(48.5%), (중견) 9,780(51.1%), (중소) 76(0.4%)

4) 참고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상거래 매출채권(수출채권 제외)에 대해서만 팩토링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중복 매입을 방지하고 있음.

- ① (제도적 제한) 팩토링 지원계획 공고상에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을 명시
- ② (채권 양도사실 통지 및 승낙) 기관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기업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고 전용계좌로 결제하도록 함
 - 동일 채권이 복수의 팩터에 양도된 경우 구매기업이 인지 가능
 - * 구매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신보 ON-Biz 플랫폼 등)에 접속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등으로 양도 승낙하는 방식
 - 구매기업이 전용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만 채무가 소멸되도록하여, 복수의 팩터에게 채권이 양도될 가능성 차단
 - * 구매기업에 채권별 입금 전용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구매기업은 만기일에 해당 계좌로 결제
- ③ (공동 관리 시스템) 신·기보·중진공 3개 기관은 판매기업별 팩토링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공동 관리 시스템 운영중
- ④ (금융결제원 시스템) 매출채권별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고유 승인번호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 등록 차단

5)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금 운용에 따른 수익·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기금 수입·지출 규정을 정합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별도 계정 신설·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는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사의 원활한 선박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RG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통상 선박 발주자는 조선사에 선수금을 지급할 때 RG(Refund Guarantee) 보증을 요구하고 은행은 해당 RG 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가입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함.

그러나 선박 건조계약이 선수금 선지급 및 장기간 이행구조로 인해 선박 발주자의 자금회수 위험이 크고, 특히 중소형 조선사는 낮은 금융 신용도, 계약 불완전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므로, 중소형 조선사의 선박 수주계약에 대해서는 RG 보증 및 이에 대한 재보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인 공사는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 RG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운용배수를 5배 수준으로 제한하

고 그동안 누적된 정부출연금 내에서 보증을 공급하는 등 보수적인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5] RG 특례보증 정부출연금 및 보증공급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정부출연금	해당연도말 유효계약액
2019	400	-
2023	-	341
2024	400	1,689
2025	900	2,837
2026	705	4,631 (※ 5월기준)
누 계	2,405	-

자료: 산업통상부

개정안은 RG 특례보증 사업이 사실상 별도계정을 분리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별도계정을 분리하여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위험 보험·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위험 전이를 제한하고 사업별 리스크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2. 부칙

안 부칙은 동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표 6]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연계투자 및 팩토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무역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동 개정안에 따라 보험·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 및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별도계정 구분·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새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공사의 업무방법서, 내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준비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